

2023년 10월 이후 유권해석, 결정사례 및 판례검토

1.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1190, 2023.9.26.)

2.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사전법규부가-0549, 2023.10.5.)

3.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법규법안-0592, 2023.10.6.)

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홍콩법인이 이를 침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 및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소하고 홍콩법인에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홍콩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홍콩법인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국제세원-2888, 2023.10.18.)

5.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 제29의7(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특법 제29의7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임.

또한, 2023.12.31.(또는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조특법 제29의7과 조특법 제29의8(통합 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인-1263, 2023.6.8.)

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금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동 시행령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법인세제과-556, 2023.9.26.)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월하지 않는 것임(법인세제과-565, 2023.10.5.)

8.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함)가 적용됨(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9.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함(조세정책과-2089, 2023.10.20.)

10.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수령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3항 제2호(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및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법인-592, 2023.10.6.)

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제과-586, 2023.10.12.)

13.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전경련)의 회원사로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쟁점회비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비정기적으로 회원사 중 일부 납부여력이 있는 회원사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이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 과세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되나 전경련이 심판청구과정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도록 결정한 사례임(조심 2022서6602, 2023.11.1.)

14. CFC과세(국조법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저세율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 지주회사(국조법 제28조 제3항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15.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과세관청은 유권해석(기준법령법인-35, 2021.8.24.)을 통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업자가 동법 제71조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손금의 요건인 사업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해당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하였음.

이에 대해 조시심판원은 대법원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두7779, 2009.6.23.)하였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현재 다른 경쟁사들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인 점, 또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손금에 해당됨(조심 2022서 7688, 2023.11.16.)

16.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산세제과-1340, 2023.11.21.)

17.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임(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5.2.)

1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법인-0654, 2023.10.31.)

19.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잔여연봉액의 70%)의 손금해당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은 정관 및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해당된다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 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조심 2022서36, 2022.4.6.). 쟁점 퇴직금규정은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위로금 지급 전 다른 임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쟁점 위로금은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결정함(조심 2023중720, 2023.12.4.)

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착공일 불분명시는 착공신고서 제출일)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때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인정하기 위하여는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신축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 등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말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95누7857, 1995.9.26.)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착공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조심 2023 중458, 2023.12.7.)

2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매수인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 등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처리되었음. 이 특별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보유주식의 매각시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인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에 해당된다 결정함(조심 2022중2885, 2023.12.12.)

2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양도당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보유기간 중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양도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임(사전법규법안-817, 2023.12.13.)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동법 제34조의2 제2항의 적용에 있어 동조 제6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2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

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함(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26.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법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피합법법인의 세액공제 적용여부(조세특례제도과-30, 2024.1.15.)

(1) 질의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법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신)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법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2) 질의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법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여부
(회신) 적용불가

(3) 질의 3

의제사업연도에 피합법법인의 2차, 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
(회신) 적용불가

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2019 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19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조세특례제도과-41, 2024.1.18.)

28.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
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이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시 법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시 감면율 50%를 적용함이 타당함(조심 2023부 7255, 2024.1.24.)

3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법인세제과-49, 2024.1.25.)

31. 내국법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제과-41, 2024.1.25.)

32.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조세특례제도과-86, 2024.1.29.)

33.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조특법 제7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임(법인세제과-79, 2024.1.29.)

34. 청구법인(매도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보유하고 있던 법인(매각대상법인)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과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됨(조심 2022중5989, 2024.1.31.)

35. 해당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사전법규재산-678, 2024.2.14.)

3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관할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제과-78, 2024.2.14.)

37. 퇴직급여 중산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법인-5564, 2024.2.29.)

38.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하여(청년등은 감소, 청년외는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 고용 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증가한 인원 수의 계산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조세특례제도과-199, 2024.3.8.)

39.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10231, 2024.3.20.)

40. 청구법인이 리비아 현지 자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채권과, 동 법인에 인원을 파견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경영관리 및 현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은 받아들여야 함(조심 2020서8112, 2024.3.21.)

4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교환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입고받아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는 다른 사람들로서 본인은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음.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를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함(조심 2023인9349, 2024.3.26.)

42.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웹툰작가)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175, 2024.3.29.)

43. 원심(서울고법 2012누11449, 2013.3.22.)은 원고가 2001년 A법인의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추후 다시 2004년에 B법인에게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소외 5 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자로서 저가매입에 따른 소득금액과 저가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제52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10년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저가매입과 저가양도로 얻은 소득금액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가 소외 5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지배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등의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인 점, 이와같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과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기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판결하였음(대법원 2013두7667, 2024.4.4.)

44.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사전법규법안-131, 2024.4.5.)

45.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총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총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총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이 합병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총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총당금)으로 대체함(서면법인-472, 2024.4.8.)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22.) : 2024.4.1.부터 시행

- (1) 금형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대상에 포함
- (2) 비고 3호의 개정
 - 1) 종전내용
공장, 창고 등의 경우 연와조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10년(범위 8년~12년), 철골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건축물은 20년(범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 2) 개정내용(2024.4.1.부터 시행)
별표 5의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가. 공장, 창고 등 건물 및 축사 :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폐기물 처리용 건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건축물 : 20년(15년~25년)
- (3) 개정규정의 적용
 - 1) 2023년 이전의 사업연도에 내용연수를 단축 적용한 기업들은 2024.4.1. 이후 신규로 취득한 해당 자산부터 개정된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됨(내용연수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2)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법상 신고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므로 1)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면 됨
 - 3) 2)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내용연수 변경시 담당 공인회계사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임

47.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제4조 제2항 및 국조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규국조-2595, 2024.4.18.)

48.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국제세원-157, 2024.4.22.)

49.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예탁기간 구분에 따른 인출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서면법규재산-474, 2024.4.22.)

50.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법인-3508, 2024.4.22.)

51.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동 기부금액은 해당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주택, 사업시설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903, 2024.4.25.)

52.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동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근거로 2020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사채권 등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 이후에 장부상 대손처리한 금액을 손금 불산입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는 결정사례임(조심 2024서368, 2024.4.25.)

53.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5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해당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사전법규법인-99, 2024.4.26.)

54.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 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사전법규법인-23, 2024.4.26.)

55. 2023.12.31.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합병법인은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에 계상) 배당금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조심 2023서7399, 2024.4.29.)

이는 2023.12.31. 법인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분부터는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배당금액은 과세토록 개정되었음

56.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조세정책과-855, 2024.4.30.)

57.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함(사전법규법인-242, 2024.4.30.)

58.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해당금액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이를 현금지급시 손금 추인한 조정에 대하여 회사가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전의 사업연도분(2017년)부터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회사는 2017년에 2016년분 미지급비용분을 손금추인하고 2017년분 미지급비용분을 손금불산입하였음) 과세관청은 2016년분의 손금추인액을 부인하는 경정을 할 수 없음(기준법규기본-106, 2024.5.1.)

59.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특법 제29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대체인력고용시)로서 조특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조세특례제도과-366, 2024.5.2.)

2024.1.1. 이후부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

60.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조특령 제2조 제2항) 적용이 불가함(조세특례제도과-371, 2024.5.3.)

61. 법인이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타당함(조심 2023인-10150, 2024.5.7.)

62.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 되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사전법규법인-170, 2024.5.8.)

63. 내국법인이 중국 및 베트남에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과세관청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처분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등을 종합하면,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내국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내국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국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들이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됨(조심 2023중 3452, 2024.5.13.)

64.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시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사전법규법인-145, 2024.5.13.)

65.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 제56조 제11항(인건비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함(법인세제과-268, 2024.5.14.)

6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사회결의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참여한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함(조심 2023인10285, 2024.5.16.)

67.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사전법규국조-16, 2024.5.22.)

68.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 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소독-4240, 2024.5.29.)

69.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무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법규법인-241, 2024.5.31.)

70.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주주가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조건)를 다른 개인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균등조건 배정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제8호의2 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됨(대법원 2023두 39809, 2024.6.13.)